

| | | | | | |
|------|-------------|-----|------|-----|-----|
| 문서번호 | 제작 1330~151 | 기 안 | 전문위원 | 간사 | 위원장 |
| 보존기간 | 영구 | ★ | 김천우 | 이기수 | |
| 보고일자 | 1999. 7. | 협 조 | | | |

1999. 7. 14(수)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7. 1 제천시장
- 나. 회부일자 : 1999. 7. 3
- 다. 상정일자 : 1999. 7. 8(제49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전용·이용·사용료 등 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과 불합리했던 전용·사용·이용료를 현실화시키며, 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함.

나. 주요내용

-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사용료 정산을 행사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로 함.
- 위탁운영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의거 신청토록 하고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며 계속 사용허가 신청 시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서에 의거 신청토록 하고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년2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에 대한 조

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 신설

-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법적검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행조례에 그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는 사항등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적검토

-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나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 재위탁금지,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의 행위금지 시설의 증·개축시의 문제와 기부채납 조항 등의 규정이 없어 금후 조례를 보완하거나 규칙·협약서 등에서 경증을 따라 규정함이 관리 운영상 안전하리라 사료됨.
-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율의 인하, 각종 시설물의 전용·사용·이용 등에 대하여는 다 조례와의 형평성 물가안정 시책과의 연관성, 관리운영의 합리성, 이용자들의 심리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1)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 하는 이유는? (민경환위원)
- 2) 체육시설 (특히 종합운동장)에서 관람료수입을 징수 해 본 적이 있는가? (민경환위원)
- 3) 과거 2년동안 4건을 유치하였다고 했는데, 사용료 징수요율을 10%로 인하할 경우 그 이상으로 유치할 자신은 있는가? (민경환위원)
- 4)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관리자가 선임되었는가? 그리고 신청자는 얼마나 있었는가? (장기홍위원)
- 5) 사용료 징수요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용료와 이용률은 별개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장기홍위원)
- 6)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협약서에 넣었다고 했는데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지 않은가?
(장기홍위원)
- 7) 단체의 입장료 징수율은 높은가? (장기홍위원)

8)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본다.
사용료 인상 폭을 보면 70%-150%로 과다 인상으로 보이는데 사용료를 조정한 것은 몇년쯤 되었는가? (박태석 위원)

9) 인근 시군을 따라 사용료의 갑작스런 과다인상은 시민의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박태석 위원)

10) 조례로 이용료를 정해 주었는데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해서 받을수도 있는가?
(조병석 위원)

11)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재위탁금지,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의 행위금지를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협약서에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협약서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협약자 당사자간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수탁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를 보완할 생각이 있는가? (조병석 위원)

나) 답변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승)

1) 여러 가지 시설의 사용료에다 관람료수입의 사용료까지 과다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서 활용이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어 다소 경감시켜 줌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한다.

- 2) '97, '98년 2년간에 걸쳐 4건이 추진되었다.
- 3) 그렇다.
- 4) 선정이 않되어 14일까지 2차공고를하여 신청자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1차공고때 7개 개인, 단체가 신청했는데 선정은 않되었다.
- 5) 사용료 하향조정은 운동장, 체육관, 스포츠센터 등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입장권을 발행하여 행사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에 한해 입장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지 일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6)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음.
- 7) 사용료 20%는 각종 기금, 세금 등을 내면 이용자나 단체에는 60-65%정도밖에 안돌아가 부담이 된다.
- 8) 5년전에 정하고 개정하지 못했음

- 9) 전체 시민과 관계없이 특정한 이용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준한 것임.
- 10) 그렇게는 안되며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
- 11) 협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하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조례 제26조에 보면 지도감
독이라든가 회계, 각종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는 지시해서 시정토록 하는 조항도 있어 크게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1년동안 현행대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이 자작
해 주신대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다.

5. 소수의견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